강릉시의회 공고 제2021-18호

「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8월 9일

강 룽 시 의 회 의 장

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○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기존의 평가소득 보험료에서 정액의 최저 보험 료로 변경됨에 따라 저소득주민 용어 정의를 개정하고, 보험료 지원대상 을 명확히 하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저소득주민 용어 정의 개정(안 제2조)
 - (종전) "저소득주민"이란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에 따른 생

계 ·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기준 중 위소득60%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- (개정) "저소득주민"이란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 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 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.
- 나. 보험료 지원대상 개정으로 예산 집행 효율화
 - (종전) 만65세 이상 노인 세대
 - (개정) 만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
- 다. 부칙(시행일):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
 - 지원 대상 변경에 따른 준비기간 등 고려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입법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・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보내실 곳:
 - 주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 - 전화: 033-640-4100
 - 팩스: 033-640-4070

붙임 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・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"을 "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"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"저소득주민"이란 「의료급여법」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.

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법규명:				
○ 성명(단체명) :				
○ 주		소 :		
○ 연	락	처 :		

제・개정안 내용	의	견	비고